



이사회 규정

제정 2017. 8 .11.

개정 2018. 3 .02.

개정 2021. 8 .06.

개정 2021.11.05.

개정 2023. 2 .16.

개정 2023. 5 .15.

개정 2024. 2 .15.

개정 2026. 2 .06.

매일유업 주식회사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이사회的高效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2장 구 성

제4조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(독립이사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제5조(의장)

- 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 단, 대표이사가 수명인 경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중 1인을 의장으로 선임한다.
- ②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 제1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장 회 의

제6조(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개최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7조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급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8조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.

제9조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- (1) 주주총회의 소집
 - (2) 영업보고서의 승인

- (3) 재무제표의 승인
- (4) 정관의 변경
- (5) 자본의 감소
- (6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- (7) 주식의 소각
- (8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
- (9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(10) 이사,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(11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- (12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
- (13) 주식배당 결정
- (14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(15) 이사의 보수
- (16)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(이 때 거래라 하면 본 규정 제10조 ①-5-(3)과 (4)를 대상으로 한다)
- (17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2) 공동대표의 결정
- (3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(4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해임
- (5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
- (6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(7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- (8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(9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
3. 재무에 관한 사항

가. 재무에 관한 아래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하되 각 항목별 대상

부의기준은 [별표]에서 정하고, 이외의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위임한다.

- (1) 투자에 관한 사항
- (2) 중요한 계약의 체결
- (3)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
- (4) 결손의 처분
- (5)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
- (6) 신주의 발행
- (7) 사채의 모집
- (8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9) 전환사채의 발행
- (10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11)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
- (12)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
- (13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- (14) 자기주식의 소각

나.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소관업무 해당 임원에게 당해 사항의 집행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킬 수 있다.

다.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, 대표이사가 지정한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
4. 이사에 관한 사항

- (1)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
- (2) 타회사의 임원 겸임

5. 기 타

- (1) 중요한 소송의 제기
- (2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- (3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사항
 - 1) 단일 거래규모가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거래

2)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거래에도 불구하고, 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.

- 1)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약관(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)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
- 2)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

(4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3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11조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12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

-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13조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14조(독립이사의 임기)

- ① 독립이사는 연속하여 6년을 초과 연임할 수 없다. 이때 6년의 기간은 단, 본조의 본문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 종료 후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임기를 인정 한다.
- ② 이사회는 제1항의 임기 제한이 적용되도록 독립이사 후보를 선정하여야 한다.

제15조(의사록)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제16조(간사)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CFO가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17조(규정의 개폐)

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7년 8월 11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8년 3월 0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8월 0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11월 0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3년 2월 1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3년 5월 1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2월 1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제2조(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)

제4조, 제14조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이사회 부의 대상 재무에 관한 사항 지정

(아래의 자기자본, 매출액은 최근 사업연도 말 사업보고서상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)

(1) 투자에 관한 사항

- ① 자기자본 5% 이상의 신규시설 투자 및 유형자산의 취득/처분
- ② 자기자본 5% 이상의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에 관한 결정
- ③ 신 기술 및 신 물질을 취득한 때
- ④ 자원개발 투자 결정

(2) 중요한 계약의 체결

- ① 자기자본 5% 이상의 기술도입 또는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 체결 시
- ② 매출액 10%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
- ③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
- ④ 정관 변경 등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

(3)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

- ① 자기자본 5% 이상의 신규시설 투자 및 유형자산의 취득/처분

(4) 결손의 처분

- ① 결손금 발생시 결손의 처분에 관한 사항 : 금액불문 결정 시

(5)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

- ① 자기자본 5% 이상의 공장생산의 중단, 폐업된 때, 생산이 재개된 때

(6) 신주의 발행

- ① 신주의 발행이 결정된 때 : 금액불문 결정 시

(7) 사채의 모집

- ① 사채의 모집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 : 금액불문 결정 시
- (8) 준비금의 자본전입
 - ① 결산 시 준비금의 자본전입이 필요한 때 : 금액불문 결정 시
- (9) 전환사채의 발행
 - ① 전환사채 발행 결정 : 금액불문 결정 시
- (10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 - 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: 금액불문 결정 시
- (11)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
 - ① 자기자본 5%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
 - ② 신규차입 및 차입금 연장, 차환에 관한 결정
 - : 신규차입 자기자본 5% 이상 이사회 승인
 - 연장, 차환 시 대표이사에게 위임
 - ③ 자기자본 5% 이상의 단기차입 증가에 관한 결정
 - ④ 자기자본 5% 이상의 채무에 대한 전액 인수
- (12)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
 - ① 자기자본 5% 이상의 중요한 재산의 저당권 및 질권 설정
- (13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 - ① 자기주식의 직접 취득/처분 및 신탁계약 체결/중도 해지에 관한 결정
 - : 금액불문, 취득/처분에 관한 결정 시
 - (신탁계약 체결/중도해지 시 포함)
 - 신탁계약 내 취득/처분은 보고 불요
- (14) 자기주식의 소각
 - ① 주식소각에 대한 결정 : 금액불문 처분에 관한 결정 시